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인정범위

◎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 - 445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인정범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6년 12월 28일
통상산업부 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범위와 법 제12조 및 영 제21조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인정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력기술관련학과) 전력기술관련학과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전기공학과(전기과 포함)
2. 전자·전기공학과
3. 전기·전자공학과
4. 전기제어공학과
5. 기계·전기공학군(부) 등은 전력관련 학과를 이수한 자 또는 전기전공 자

제3조(학력인정범위) ① 대학교졸업 학력 인정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해당 전력기술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② 전문학교(5년제 고등학교 포함)졸업 학력 인정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단기사관

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전력기술관련 전력기술교육원·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전력분야 교육기관에서 2년과정 이상의 전력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3년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중퇴한 자
- ③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를 고등학교이상 졸업하고 다음 각호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고등학교졸업 학력 인정한다.

1. 전력기술관련 전력기술교육원 또는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전력분야 교육기관에서 1년이상 전력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 등의 교육기관에서 1년이상 전력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과정을 2년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중퇴한 자

제4조(인정범위) 영 제3조 별표1 나 비고



호와 별표 2 비고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관련학과 외의 학과의 졸업자로서 전력기술인 또는 감리원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초급 또는 중급기술자, 초급 또는 중급감리원이 될 수 있다.
2. 경력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자격취득자 또는 전력기술관련학과 졸업자 이외의 전력기술인으로서 제5조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제5조(전력기술인협회의 회원가입) 국가가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력기술인 인정범위

구 분		경력인정기준
전 력 기술인	중급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기술관련 외의 학과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0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력기술관련 외의 학과에서 전문학교 졸업한 자로서 13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16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기술관련 외의 학과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4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력기술관련 외의 학과에서 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1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8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감리원	중급감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기술관련 외의 학과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0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력기술관련 외의 학과에서 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3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16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감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기술관련 외의 학과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력기술관련 외의 학과에서 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10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